

우즈베키스탄 공화국

영리활동의 자유보장에 관한 법률

제 1 장 일반규정

- 제 1 조 이 법률의 기본과제
- 제 2 조 영리활동의 자유보장에 관한 법령
- 제 3 조 영리활동의 개념
- 제 4 조 영리활동의 주체
- 제 5 조 중소기업의 주체
- 제 6 조 개인사업의 주체
- 제 7 조 법인설립 없는 자연인의 공동기업행위
- 제 8 조 영리활동주체의 권리
- 제 9 조 영리활동주체의 의무
- 제 10 조 영리활동주체의 결합

제 2 장 영리활동의 실현 근거

- 제 11 조 영리활동주체의 법인 등기
- 제 12 조 삭제
- 제 13 조 영리활동의 인가
- 제 14 조 영리활동의 재산적 토대
- 제 15 조 영리활동주체의 보험과 대출
- 제 16 조 삭제
- 제 17 조 등록과 보고

제 3 장 영리활동주체의 권리보장

- 제 18 조 영리활동주체의 헌법적 권리보장
- 제 19 조 영리활동주체의 활동의 자유보장
- 제 20 조 영리활동주체가 얻은 이익 실현의 보장
- 제 21 조 영리활동주체의 금전처분권 보장

- 제 22 조 영리활동주체의 대외경제활동의 보장
- 제 23 조 영리활동주체의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의 보장
- 제 24 조 영리활동주체의 농업활동을 위한 토지사용의 보장
- 제 25 조 영리활동주체의 농장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의 보장
- 제 26 조 개인사업자의 성명사용권 보장
- 제 27 조 영리활동주체의 원자재 사업 허용
- 제 28 조 영리활동주체의 농업 허용
- 제 29 조 영리활동주체의 관개업 허용
- 제 30 조 금융자금보장
- 제 31 조 정보의 보장
- 제 32 조 국유화로부터 보장
- 제 33 조 상호 및 상표 사용의 보장
- 제 34 조 영리활동의 실현 보장

제 4 장 영리활동주체의 권리보호

- 제 35 조 영리활동주체의 평판의 보호
- 제 36 조 지적재산권 보호
- 제 37 조 영리활동주체의 상업적 비밀 보장
- 제 38 조 영리활동주체에 손해배상
- 제 39 조 영리활동주체에 조사의 제한
- 제 40 조 조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의 요건

제 5 장 영리활동의 국가지지

- 제 41 조 국가기관의 권한
- 제 42 조 지방국가기관의 권한
- 제 43 조 국가의 기업 발전 조성
- 제 44 조 영리활동기금
- 제 45 조 조기상환
- 제 46 조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면세
- 제 47 조 영리활동 인재에 대한 국가의 지원

제 6 장 종결규정

제 48 조 영리활동주체의 청산

제 49 조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

제 50 조 분쟁해결

제 51 조 영리행위의 보장의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